

# 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1995년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4월 4일 삼척시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4월 4일

다. 심사일자 : 제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95. 4. 10)에서 심사의결

### 2. 제안설명의요지(농촌지도소장 조대현)

#### 가. 제안이유

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례제명과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 임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조례제명을 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제명을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5조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농촌지도소장이 필요시"로 개정함.

###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문순기)

- 현재 농촌지도소에 영농기술훈련교육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 의회의결을 거쳐서 '95.1.7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동조례를 영농기술훈련원의 운영성격과 현실에 맞게 조례제정의 명칭을 (..." 설치조례"로 하며) 변경하고,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농촌지도소장이 필요시 농촌지도소 정원의 범위내에서, 적임자를 탄력적으로 이를 배치할 수 있게 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영농기술훈련원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교육효과가 높을시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과제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원의 범위에서 직급을 변경하므로 예산이 수반되는것이 아닌지?</li><li>○ 훈련원으로서 따로 정원을 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님.</li><li>○ 자원을 별도로 두고 훈련을 받도록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임.</li></ul>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